울산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

# 「2025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」 2차 공고

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 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 모델을 갖춘 콘텐츠에 대한 개발/제작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「2025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」을 2차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. 6. 17.

#### 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

# 1 개요

## □ 사업목적

○ 사업목적 : 울산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/제작 역량 및 사업화 강화

### □ 공모개요

○ 공 모 명 : 2025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

○ **공모방식** : 자유공모 ※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
○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'25. 11. 30.

※ 개발 및 제작 완료 : `25. 10. 31.

○ **지원규모** : 총 3건 / 총 300백만원(국비)

○ 공고기간 : '25. 6. 17.(화) ~ 7. 1.(화)

○ 신청기간: '25. 6. 17.(화) ~ 7. 1.(화), 16:00까지

○ 지원대상

구분	내용	비고
주관기관	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	
참여기관	역외기업(서울 포함),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(선택)	

○ 지원조건 : 민간자부담(10%) 이상 별도 편성 필수

※ 사업유형별 지원조건 상이함. 세부내용 참조

○ 지원내용 : 콘텐츠 전 장르(게임 제외) ※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(정의) 준용

# 2 세부내용

# □ 추진체계 및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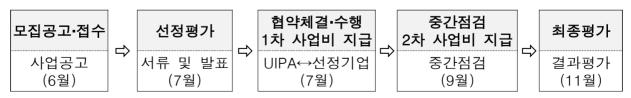
#### ○ 추진체계



#### () 역할

구 분	주요 역할			
	• 사업 공고 및 과제 적합성 검토			
   울산정보산업 진흥원	•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(수행기관과 공동)			
출연성포인됩 연증편 	• 착수, 중간점검 및 평가, 예산집행 등 수행과제 과제관리 일체			
	· 수행기업 지원(e나라도움 사용, 사업비 집행 안내 등)			
11 T   T   T   O   O   T	• 과제 선정평가 및 선정과제 사업비 조정			
선정평가위원회	· 그 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			
	· 과제 신청 총괄 및 협약체결(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동)			
스레기어	∘ 해당 과제의 개발 등 추진			
수행기업	∘ 해당 과제 실적 자료 작성			
	•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업무			

### ○ 추진일정



※ 추진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공모내용

○ 공모방식 : 자유공모

○ 신청방식 :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
○ **지원규모** : 총 3건 / 총 30백만원(국비)

○ **사업기간** : 협약체결일 ~ '25. 11. 30. <u>※ 개발 및 제작 완료 : `25. 10. 31.</u>

○ 지원분야(공통)

- 국내·외 시장진출 가능한 우수 콘텐츠\* 시제품(신규제품) 제작

※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 준용

\* 게임(온라인게임) 제외

-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<u>`25.10.31.</u> 내로 완성된 콘텐츠(제품) 형태로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
-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콘텐츠는 사업화 추진(판매, 방영, 연재·게시 등)이 가능해야 함 (단, 사업예산 내 결과물을 대량 양산하는 비용은 편성 불가능)
- ※ 타 기관 지원 장르 제외 : 순수문학 및 출판(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), 영화(영화 진흥위원회), 순수 디자인(한국디자인진흥원), 공연 등 문화예술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등

#### ○ 지원규모

유형	지원 대상	총 지원금액 (기업수)
시제품 제작	구체적인 시장진출 계획을 수립한 시제작품	30,000천원 내외 (3개사 내외)

※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성 있으며 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함

#### ○ 지원조건

구분	시제품 제작	비고
조건	<u>10% 이상</u> 현금 민간자부담 별도 편성 필수	공통

#### □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

## ○ 신청자격

-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 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 기업 (부동산업,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)
- ※ 콘텐츠 기업: 게임을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(콘텐츠를 자체 제작·개발하는 기업)
- ※ 사업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울산
- ※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지정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을 기준
- ※ 공고기간 내 울산 이전 완료 가능한 기업 또는 협약일 이후 1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기업(협약일 이후 이전 시 이전 확약서 접수서류 필첨)

#### [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]

- 1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・개발・제작・생산・유통・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  - 가. 영화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  - 나. 음악 게임과 관련된 산업
  - 다.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  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  - 마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
  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 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#### ○ 신청 및 제한기준

구분	세부내용
신청기준	<ul> <li>안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, 대기업/대학/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</li> <li>보사·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에는 본사로 지원해야 함,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사로 지원 가능</li> <li>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(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과제</li> <li>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</li> <li>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지 않은 경우</li> <li>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 및 참여기업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 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</li> <li>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</li> </ul>
제한기준	<ul> <li>직전년도 포함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</li> <li>※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과제 포함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(단,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)</li> <li>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(주관 및 참여기업)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이 경우(연구개발사업 제외)</li> <li>신청일 현재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, 인건비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</li> <li>※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의하며,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, 향후관련 사업 제재조치함</li> <li>※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불가</li> </ul>

#### ○ 필수요건

-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: 참여인력 1인 이상
  - ※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 포함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수료(온/오프라인 택일)
-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이수 : 참여인력 전원
  - ※ 인정범위 :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- 개발기간 : 모든 과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 1개월 전 (10. 31.) 이내 개발 완료
  - ※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시행및 사업화 성과 후속점검 실시
- IP 등록 : 지원과제 최종산출물에 대한 IP 등록(접수) 목표
- 소재지 유지 : 사업수행 중 주관기업의 본사 및 관외기업의 지사를 관외 이전 시, 사업취지 위배에 따라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하며,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지워고지 :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
- 지원성과 사후관리 :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4년 간 관리기관 (상위기관)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 자료 의무 제출
  - ※ 제출자료(예시) : 신규채용인력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, 매출증빙(`25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 등

#### □ 사업비 편성 및 집행

- **사업비 편성** : 민간자부담(10%) 이상 현금 별도 편성 필수
  - ※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필수
  - ※ 자부담금 미집행 시 미집행 비율에 따라 지원금 환수
  - ※ 자부담금의 경우 현물 불인정

#### [사업비 관련 용어설명]

- 지원금
-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
- 자부담금(사업자부담금)
-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금액

#### [민간 자부담] 총 사업비의 10% 이상(현금)

- ∘ 총 사업비 = 지원금 + 자기부담금
- 대기업은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%이상,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제출
- 사업비 구성 예시

총사업비	지원금	민간 부담금(현금)	비고
(A + B, 100%)	(A, 90%)	(B = A ÷ 9, 10%)	
11,120천원	10,000천원	1,120천원	

#### ○ 사업비 집행

-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며, 소급적용 불가
-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본 사업의 예산에는 미편성
  - ※ 협약체결 후,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불가일 경우, 신용등급확인서로 갈음하며, B등급 이상 시 인정
- 주관 및 참여기관 간, 주관 및 참여기업 간 위탁거래 불가
- 향후 사업수행 시 지원금은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 관리 및 상기계좌와 연동된 e나라도움 전용 사업비 카드 발급 사용
- 민간자부담 사업비 계좌 입금 확인후 지원금 지급
- 예산집행 시 모든 금액 부가세 미인정(공급가액 인정)
  - ※ 이외 세부사항 사업신청 및 안내문 참조

## □ 신청방법

- 신청준비 : e나라도움(www.gosims.or.kr) 회원가입
- ∘ e나라도움 회원가입(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)
- 공고 및 신청기간
  - 공고기간 : '25. 6. 17.(화) ~ 7. 1.(화)
  - 신청기간 : '25. 6. 17.(화) ~ 7. 1.(화), 16:00까지
  - 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
  - 단, 시스템 정기점검,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
-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(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)

#### ○ 신청방법 :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
- ※ 신청서 양식 :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(https://www.uipa.or.kr) → 사업공고 → 콘텐츠 육성 지원 → 해당 공고 확인 후 다운로드
- ∘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회원가입(공인인증서 등록포함)
- e나라도움 공모신청
- ① [과제조회] e나라도움 메인페이지 상단 [공모신청] 클릭 → 공모현황 내 공모명 창에 `울산정보산업진흥원` 지정검색 → 해당 사업 공모 확인
- ② [신청서 작성] 공모명 클릭 후 [신청서작성] 버튼 클릭(공모목록 우측) → 신청기관 정보등록 작성 후 [다음] 버튼 클릭하여 순차적 입력
- ※ [사업기본정보][수행기관정보] [재원조달계획][자격요건확인][파일첨부]
- ③ [신청서 제출] 모든탭 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→ [신청서제출] → [접수완료]
- ※ 신청서 제출 완료 후, 사업신청목록상 진행상태가 [제출]상태 최종 확인
- ※ 모든 지원사업은 [한국재정정보원]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, 시스템 관련문의는 e나라도움 고객센터 이용(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-9595)
- ※ 지원사업 공모 현황 파악을 위한 접수 전 사업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.

#### • 신청 시 유의사항

- 양식목록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/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
- ※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: 50MB 이하
- ※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/보완이 불가하며, 누락파일 추가 접수 불가
- ※ 압축파일명: 기업명\_과제명(짧게).zip
  - ① 통합버전 : 1~13번 제출서류 파일 통합 및 직인날인 PDF 필첨(사업신청서 참조)
  - ② 개별버전: 1~15번 각 제출서류 별 개별폴더 지정·구분 저장(사업신청서 참조)
  - ③ 발표자료: 10분 내외(PPT 또는 PDF)
    - ※ PPT 제출 시 별도 글꼴 적용 불가(글꼴 삽입되어야함)
    - ※ 용량 초과 시, 별도 메일 전송이 가능하나, 접수마감 시간 전까지

전송이 완료되어야 함

#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## □ 선정 및 추진절차

① 공고		② 접수		③ 선정평가		④ 협약 체결
'25. 6. 17. ~ 7. 1.	$\Rightarrow$	'25. 6. 17. ~ 7. 1.	$\Rightarrow$	'25. 7월 2주차	$\Rightarrow$	'25. 7월 3주차
사업 공고		서류 접수		서류 및 발표평가		선정기업 협약체결
			1			
⑤ 1차 지원금 지급(70%)		⑥ 시업관리 및 중간점검		① 2차 지원금 지급(30%)		⑧ 결과보고 제출
'25. 7월 4주차	$\Rightarrow$	'25. 9월 중	$\Rightarrow$	'25. 9월 중		협약 마감 후 <b>10일 이내</b>
1차 지원금 교부	ĺ	중간점검 진행		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 교부		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

※ 추진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

### □ 평가 및 가산점

#### ○ 평가방법

번호	평가방법	평가자	평가내용
1	적합성검토	UIPA	<ul> <li>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(미제출)한 서류 여부</li> <li>날인(서명) 없이 제출한 서류 여부</li> <li>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서류 여부</li> <li>지원자격 기준 및 가산점 부합 여부</li> </ul>
2	과제선정 발표평가		<ul> <li>대중성, 완성도, 기획 독창성 등</li> <li>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절성</li> <li>과제주제, 수행기업 및 지원금액 등의 적정성 심의</li> <li>※ 점수제(70점/100점 이상 시 지원)</li> <li>발표자료(PPT), 자유양식, 사전 준비 필요, 접수기간 종료 직후 제출 예정</li> </ul>
3	종합심의	선정평가 위원회	<ul> <li>종합심의를 통해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등 최종선정</li> <li>※ 종합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 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</li> </ul>
4	중간점검	(7인 내외)	<ul> <li>중간결과물의 적정성, 수행관리 충실성, 추진경과 등</li> <li>발표자료(PPT), 자유양식, 사전 준비 필요</li> <li>자료 요청/제출 : 평가일 14일전 / 5일전</li> <li>70점 이상 시 2차 지원금 교부(30%)</li> </ul>
5	최종 발표평가		<ul> <li>최종결과물의 적정성, 수행관리 충실성, 사업화 성과 및 향후 계획 등</li> <li>발표자료(PPT), 자유양식, 사전 준비 필요</li> <li>자료 요청/제출 : 평가일 14일전 / 5일전</li> <li>60점 이하 환수 대상 평가 실시</li> </ul>

- 가산점 부여(중복가능, 증빙서류 제출 必)
  - 선정평가 시 가산점은 최대 2점 부여 가능

구분	소재지	사업화	비고
내용	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	특허등록*	
가점	1점/건	1점/건	

- \* 특허 출허단계(미등록) 가산점 해당없음
- ※ 가산점은 각 구분별 최대 점수를 넘길 수 없음

# □ 지원금 지급

- 지원금 범위 : 콘텐츠 제작비
- 사업자부담금(지원금, 자부담금)은 공고에 제시된 표를 준수하여 부담해야 함
-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,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
- 총 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 선 집행 필수
- ∘ 세부 사업비 및 과제의 수는 종합심의(사업비 조정심의)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
- ∘ 이외 사업비 편성관련 준수사항은 사업공고내용 및 사업안내문 참고

○ **지급방법** : 최종선정과제에 한하여 2회 분할 지급

- 1차 지원금 :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(70%)

- 2차 지원금 : 중간점검(사업수행 및 예산집행) 결과 이상없을 시

2차 지원금 지급(30%)

※ 중간점검 결과 기준 결과 불합격 또는 이상발생 시 결과보완 및 필요시 재점검을 실시함

구분	중간점검 점수	2차 지원금 지급	비고
합격	70점 이상	2차 지원금(30%) 지급	과제 지속수행
불합격	70점 미만	보완계획 수립 및 제출 후 2차 지원금(30%) 지급	과제 지속수행 또는 중단

# 4 기타

## □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기본진흥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(한국콘텐츠진흥원)」, 「콘텐츠 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(한국콘텐츠진흥원)」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지침(울산정보산업진흥원)」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
- 1차 지원금 지급 전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가 허위 판명 시 협약해약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신청서는 접수일의 해당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불가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, 행정 대행기관 등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 확인 시,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 불가 ※ 단,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
- 선정결과는 e나라도움 시스템 선정결과 및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지
-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,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음(기지급 지원금 전액 반납)

-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 누락 또는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해 통보 하지 않으며, 이에 발생한 불이익을 신청기업에 있음
- 신청과제는 우리원 사업 및 과제 홍보 등을 위한 언론홍보와 공식 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
- 최종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 하고,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.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
- 최종선정 후, 협약서 [성과관리] 조항에 의거, 신청일 현재 사업자 (주관 및 참여기업)가 과거 3년 내 우리원의 지원사업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
-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,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-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(미제출)한 서류가 있는 경우
  - 날인(서명) 필요 서류에 날인(서명) 없이 제출한 경우
  - 인감을 날인해야하는 경우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,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
  -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
- 선정업체는 명확한 보조금 집행·관리를 위해 **중간점검 실시 전 까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수료증을 제출**하여야 함
-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·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  -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 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(교부 취소, 계약해약 등)
  - 민간보조사업 수행단계에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, 신고 상담 필요 시 [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] 통합센터 이용 [통합센터 대표번호] 1679-5678(1번), 누리집(https://bora.kocca.kr)

-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- ※ [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10조(`21.1.6.)]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
- ※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보조 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- 당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불인정
- 사업 선정·수행 등과 관련된 평가의 발표는 과제책임자 이상이 진행
-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울산시, 울산정보 산업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 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없음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(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)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선정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,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 □ 문의처 및 제출서류

- 사업문의 : 콘텐츠진흥단 (052-243-7265/hslee@uipa.or.kr)
- 온라인 접수문의 :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참조 ※ 양식준용

2025. 6. .17.

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